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저출생 극복과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대체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체복무요원에게 청원휴가 부여 시, ‘직계가족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직계가족”을 “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 또는 자녀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: 10일 이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)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청원휴가 가. (생략) 나. <u>직계가족</u> 의 질병·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: 연 30일 이내 다. ~ 자. (생략) <u><신설></u> 3.·4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32조(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조부모, 외조부모, 부모</u> <u>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</u> <u>다), 배우자 또는 자녀---</u> -- 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 차. <u>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</u> <u>검진에 동행하는 경우: 1</u> <u>0일 이내</u> 3.·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9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41